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96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9월 7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부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행의 범위를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대행의 범위를 기금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로 규정함(안 제18조)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8조의 “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”를 “기금관리운영 업무의 일부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3조”를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”로 한다.

제3조의3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3(계정 간의 구분) 제3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.

1. 용자계정
2. 투자계정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용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의 출연금
 2. 용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 3. 그 밖에 출연금·보조금·차입금·예수금 및 용자상환금
 4.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
-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의 출연금

2.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 3. 그 밖에 출연금·보조금·차입금·예수금
 4.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투자된 기금의 회수금
- ③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.

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하고 제5조제1항과 제5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용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
1.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용자
 2. 금융기관의 저금리용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
 3. 기금 차입금·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
 4.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
 5.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
 6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-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
1. 창업투자회사, 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
 2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
제6조제1항 중 "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별로 기금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"를 "용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"로 하고, 제6조제2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하며,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

각각 신설한다.

② 용자계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사업별로 기금을 구별하여 운영한다.

1. 중소기업 용자지원사업
2. 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지원사업
3. 시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의 출연을 위한 출연사업

③ 시장은 투자계정과 용자계정의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, 지원대상,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중 “소상공인지원과장”을 “소상공인지원과장(용자계정), 경제정책과장(투자계정)”으로 하고, 제7조제1항제3호 중 “소상공인지원담당사무관”을 “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(용자계정),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(투자계정)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각 계정별로 구성·운영하되, 계정별로 위원장”으로 하고,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용자계정: 소상공인지원과장, 공정경제과장
2. 투자계정: 경제정책과장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(업무의 대행)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산하 출자·출연 기관에 기금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1조(대행사무에 대한 검사 등) ① 제18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대행하는 시 산하 출자·출연기관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시 산하 출자·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시 산하 출자·출연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·구 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<u>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</u>」 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및 「<u>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 제62조의17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<신 설></p>	<p><u>제3조의3(계정 간의 구분) 제3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.</u></p> <p>1. <u>용자계정</u></p> <p>2. <u>투자계정</u></p>
<p>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<u>기금</u>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시의 출연금</p> <p>2. <u>기금</u>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</p> <p>3. 그 밖에 출연금·보조금·차입금·예수금 및 <u>용자상환금</u> 등</p> <p>4. <u>제5조제1항제4호</u> 및 <u>제5호</u>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</p>	<p>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<u>용자계정</u>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용자계정</u>-----</p> <p>3. ----- ----- <u>용자상환금</u></p> <p>4. <u>제5조제1항제4호</u>----- -----</p>

<신 설>

②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.

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의 출연금
2.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3. 그 밖에 출연금·보조금·차입금·예수금
4.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투자된 기금의 회수금

③ -----
---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---

-----.

제5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융자
2.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
3. 기금 차입금·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
4.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
5.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
6.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

제5조(기금의 용도) ① 융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5.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

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

7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
<신 설>

② (생략)

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·운용하며,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별로 기금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<신 설>

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

6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
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창업투자회사, 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

2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-----
-----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②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사업별로 기금을 구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
2. 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지원사업
3. 시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설립한 법인으로의 출연을 위 한 출연사업</u></p> <p>③ <u>시장은 투자계정과 용자계정의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, 지 원대상,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 금운용계획 및 지원계획에 포함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 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사 무중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 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 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 별시 재무회계규칙」에서 정하 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 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분임기금운용관 : <u>소상공인지 원과장</u></p> <p>3. 기금출납원 : <u>소상공인지원담 당사무관</u></p>	<p>제7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 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사 무중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 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 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 별시 재무회계규칙」에서 정하 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 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분임기금운용관 : <u>소상공인지 원과장(용자계정), 경제정책과 장(투자계정)</u></p> <p>3. 기금출납원 : <u>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(용자계정), 펀드조</u></p>

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9조(기금운용심의회회의 구성) ① 심의회는 <u>위원장</u>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<u>소상공인지원과장</u></p> <p>2. <u>공정경제과장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<u>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(투자계정)</u>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기금운용심의회회의 구성) ① ----- <u>각 계정별로 구성·운용 하되, 계정별로 위원장</u> -----.</p> <p>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<u>음자계정 : 소상공인지원과장, 공정경제과장</u></p> <p>2. <u>투자계정 : 경제정책과장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업무의 <u>위탁</u>)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(이하 "금융기관등"이라 한다)에 그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8조(업무의 <u>대행</u>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시 산하 출자·출연기관에 기금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21조(<u>위탁사무</u>에 대한 검사 등)</p> <p>① 제18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</p>	<p>제21조(<u>대행사무</u>에 대한 검사 등)</p> <p>① ----- <u>대행</u></p>

탁받은 금융기관 등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금융기관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하는 시 산하 출자·출연기관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시 산하 출자·출연기관-----

----- 시

산하 출자·출연기관-----

-----.